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제1편 특허법 13~13p 번호 : 03	문제-보기(지문)	ㄱ.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b>생산·사용·양도·대여</b>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ㄱ. “실시”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b>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출</b>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정 사유	문제-보기(지문)_오류
제2편 상표법 55~55p 번호 : 02	문제-본문	③ (○) 상표법 제107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判例 2006다22722).	③ (○) 상표법 제107조(구 상표법 제65조)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구 상표법 제67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判例 2006다22043 참조).
		수정 사유	해설 내용 오류
디자인보호법 158p 번호 : 44	문제-보기(지문)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b>3개월</b>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b>30일</b>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수정 사유	문제-보기(지문)_오류
디자인보호법 224~224p 번호 : 02	문제-보기(지문)	<b>02번 문제 4번 보기 지문</b>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02번 문제 4번 지문 해설</b> ④ (×)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 규정이 배제된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b>02번 문제 4번 보기 지문</b>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02번 문제 4번 지문 해설</b> 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과실의 추정 규정이 배제된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수정 사유	문제-보기(지문)_오류

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02번 문제 4번 보기 지문 오류로 지문 및 해설 수정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	------	------	------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